

대상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 보조원 등 인력 및 연구시설

- 적용 배제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인 대학, 연구기관

타법 적용이 되는 일부 항목은 적용 배제

2. 연구실 안전의 개념과 책임

1) 연구실 안전제도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연구원 또는 실습생(연구활동 종사자)이 연구 또는 실험 실습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

2) 정부의 책무

- 연구활동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유형별 안전과리 표준화 모델 개발 및 보급
-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적극적인 지원시책의 강구
- 관련서류의 검사

3) 연구주체장의 의무

-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
-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준수, 게시 및 교육 훈련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사용시설 및 화학약품 등의 목록 작성
-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안전계획 작성 및 관련 문서의 정리, 유지

3. 연구실 안전 실태

1) 연구실 안전 실태

- 연구실현실 안전 정책
- 재해 발생시 비상 대응 계획
- 유해 위험인자 및 물질 작업 계획
- 건강 검진 등 관리 상태
- 휴식시간 및 휴면
- 안전보건교육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 피난 계획 및 피난 시설물 관리

	<p>2)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적 위험: 협착, 전도, 충돌, 절단 등- 화학적 위험: 연소, 폭발, 유해물질 접촉 등- 전기적 위험: 전격, 과열 등- 물리적 위험: 유해광선노출, 방사선 노출, 전자기장 노출 등- 생물적 위험: 미생물 감염 등- 작업방법 위험: 근골격계질환, 신체통증, 염좌 등
<p>* 교육실시 후 1주일 이내 기록할 것 * 기록유지 3년간 보존</p> <p>* 교육참석자명단 (첨부참조: 참석자 학번, 이름, 학부(과), 서명 등 필히기록)</p>	